

## 호서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,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“대학원생”이란 호서대학교 대학원(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서 학위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을 말한다.

② “학업 및 연구”이란 학위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 수강과 연구 활동을 말한다.

③ “연구출판물”이란 논문이나 간행물을 포함하여 대학원 과정 내에 발간한 모든 출판물을 말한다.

④ “구성원”이란 호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학부생, 대학원생 등 본 대학에 재학하거나, 교수, 직원, 연구원 등 본 대학에 직·간접적으로 고용된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.

⑤ 이하 이 권리장전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 통념에 따르는 정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의 입학 시부터 졸업, 자퇴 등에 의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적용된다.

###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

**제4조(자기 결정권)**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, 학업과 연구는 건강, 안전, 혼인과 모성의 보호,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.

**제5조(평등권)** 대학원생은 성별, 국적, 인종, 연령, 장애, 종교, 임신과 출산, 정치적 성향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사유를 근거로 차별당하지 않는다.

**제6조(학업·연구권)**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되며,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, 연구,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.

④ 대학원생의 석·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,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.

**제7조(지식재산권)**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,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.

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,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주저자로서의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.

**제8조(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)**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,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, 그

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.

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·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.

**제9조(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)**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·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③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.

**제10조(조교의 권리)**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,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이 실습조교, 연구조교,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·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, 근로내용,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)**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은 학과·전공·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.

③ 모든 대학원 학과·전공·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, 일관되며,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.

**제12조(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)**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.

**제13조(지도교수 변경의 권리)**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,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.

② 지도교수가 휴직, 연구년(안식년 포함),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(개정 2020.08.12.)

③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, 대학원장(주임교수 등)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, 학생 본인이나 지도교수 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**제14조(그 밖의 권리)**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.

### 제3장 대학원생의 책임과 의무

**제15조(구성원으로서의 의무)** 대학원생은 본 대학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학교의 명예와 재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학업 및 연구)** ① 대학원생은 바람직한 원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.

② 대학원생은 본분인 학업 및 연구의 수행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통해 대학원의 핵심가치를 고취하고 학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대학원생은 학위취득 요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,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진다.

**제17조(연구윤리)** ① 대학원생은 연구의 제안, 수행, 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관해서 위조, 변조,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윤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
② 대학원생은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.

**제18조(시설사용 및 안전)**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공간과 지원시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, 학내 안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.

## 제4장 보칙

**제19조(침해구제)** ① 대학원생이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,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.

**제20조(대학 구성원의 책무)**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 및 책임을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.

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(2018. 2. 1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권리장전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권리장전의 개정)** 이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혹은 대학원생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언제든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(2020.08.12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권리장전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